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77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정태호·서영교·한병도

김태년 · 강준현 · 이건태

정성호 · 김주영 · 이학영

이수진 · 임광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의 등록요건 중 자기자본 요건을 최하 1천만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시·도에 등록하려면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법인은 5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법인이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대부계약의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지나치게 낮아 영세한 대부 업자의 등록과 폐업이 빈번하며, 최근에는 가장납입으로 자기자본 요 건을 서류상으로만 갖춘 뒤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을 갖추지 아니하 고 대부업에 등록한 후 영업을 한 대부업자가 적발된 바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등 불법 대부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의 법정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천만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해당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그이자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며, 미등록대부업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및 등록갱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함으로써 고금리 불법 영업의 근절과 금융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8조제5항, 제13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천만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경우"를 "경우(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된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원본(元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제1항 중 "제6항까지의"를 "제7항까지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1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2호의 요 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5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5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3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자율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8 조제5항 및 제6항(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3조	제3조의5(등록요건 등) ①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u>.</u>
1.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1. 5억원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다만,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	②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1천만원</u> 이상으로서 대통령	2. 5억원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다만,	<u>-</u>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 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 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 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 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⑥ (생략)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 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 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
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는 그 이자계약을
포함한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자에게 이자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된 이자 전액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있고, 대부업자는 채무
자에게 원본(元本)의 반환을 청
구할 수 없다.
<u>⑥</u>
<u>경우</u>
(제5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터 <u>제6항까지의</u> 규정을 준용한 다.

-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① (생 략)
 - ② 시·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생 략) <u><신 설></u>

<신 설>

- 2. ~ 8. (생략)
- ③ ~ ⑧ (생 략)
-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 ④ (생 략)
 -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 <u>제7항까지의</u>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2
<u>제1</u>
호, 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
1. (현행과 같음)
1의2. 시・도지사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
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u>한 경우</u>
1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
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2항제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
한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F)

이자 또는	연체이자	를 받	은 경
우 그 이	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	항부터	<u>제6</u>
<u>항</u> 까지의 -	규정을 준	용한다	

제19조(벌칙) <u><신 설></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 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u>한 자</u>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삭 제> 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

<u>제7항</u>
제19조(벌칙) <u>① 다음 각 호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
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u>은 21</u>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
<u>을 한 자</u>
<u>②</u>
- <삭 제>

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 <u>을 한 자</u>

- 3. ~ 5. (생 략)
- ② (생 략)
-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 다.
- 3. ~ 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③ <u>제1항 및 제2항의</u> 징역형과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u>----